

## '26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 기준

### 1. 우선지원 기준

①기초생활수급자>②차상위계층>③연소자순(주민등록상 나이기준)>

④학년 낮은순>⑤직전학기 성적높은순(백분위)>⑥다자녀순

※ 순위방식 선택시 신청자 중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자  
순으로 선발

### 2. 지원제외 기준

-[대구권],포항시,경주시에 거주 하는 자

-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

-1학기:3월 또는 2학기:9월 중 학적변동(휴학 등) 발생자

-학기별 운영 및 회계 마감을 위하여 1학기:8월 31일 및 2학기:2월 28일  
이후 지급 요청 건

-우리대학이 별도로 정한 사업 일정(지급 요청, 소명 제출 등) 미준수자